

(參 照)

서울특별시교통사업특별회계
설치조례증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교통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5조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, 동조제2항제5호를 삭제한다.

- 3. 서울특별시정차·주차위반차량견인등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된 소요비용 중 서울특별시 수입분

부 칙

이 조례는 199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4. 九老區九老洞所在廢車場移轉要求請願의件(李秉直·金箕英議員 紹介)

(10時 53分)

○委員長 柳準向 다음은 議事日程 第4項 九老區 九老洞 所在 廢車場 移轉要求 請願의件을 上程합니다.

(議事棒 3打)

本 請願은 지난 第73回 臨時會에서 朴夏榮, 韓瑞奎, 吳世根 세 분의 委員님이 請願 審査小委員會를 構成해서 現場을 踏査하였고, 한편 法律的 問題를 檢討하는 등 그 동안 深度 있고도 진지하게 檢討를 하였으므로 小委員會에서 審査한 結果에 대해서 說明을 듣도록 하였습니다.

그러면 朴夏榮 小委員長님 나오셔서 請願 審査 結果에 대해서 報告해 주시기 바랍니다.

○請願 審査小委員會委員長 朴夏榮 請願 審査 結果를 報告드리겠습니다.

(報 告)

○청원심사 소위원회 위원장 박하영의원입니다. 본 청원은 '94년 8월 7일 이병직·김기영의원님께서 소개한 청원으로 제73회 임시회때 교통위원회에 상정되었으나 심도있는 검토를 위하여 소위원회를 구성

하여 심사토록 하였던 것입니다.

○본 청원의 요지는

-구로구 구로동 474-3 소재 폐차사업장인 한국슈레다산업주식회사는 주택가에 위치하여 폐차작업시 발생하는 소음·분진 등으로 인근주민의 생활에 피해를 주고 있으므로 주민 불편을 해결하기 위하여 폐차장을 이전시켜 줄 것을 요구한 것입니다.

○이와 같은 주민의 요구를 현장답사와 법률적 문제를 검토한 결과

- 자동차 폐차업 시설기준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75조에 근거하며 본 사업장의 위치 및 면적은 규정에 합당하고
- 사업장의 환경관련 시설을 규정하고 있는 폐기물관리법 및 시행규칙과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르면 물과 기름을 분리하여 기름은 소각토록 하고 있으며
- 분진 문제에 대해서는 대기환경보전법에 규정하고 있는 비산면지 발생사업은 주조업·제철업 및 제강업을 규정하고 있는 한편 폐차산업을 규정하고 있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.

○이상과 같은 법률적 근거에 의하여 허가업체가 만약 허가사항에 필요한 관련 법규를 준수하지 않는다면 당연히 개선명령을 할 수 있고 이 또한 따르지 않는다면 허가취소도 가능한 것입니다.

○그래서 본 소위원회에서는 법률적 검토와 현장을 방문한 결과 문제의 사업장이 법률적 근거를 위반하면서 영업행위를 하고 있는 것은 발견하지 못 하였고, 또한 법률적 근거에 의하여 합당하다고 허가를 내준 사업을 뚜렷한 이유없이 허가를 취소하거나 강제 이주케 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.

○한편, 사업주체가 설사 법규를 어기지 않고 영업행위를 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주민이 겪고있는 고통은 현실적 문제이므로 사업주 측이 최대한 소음과 분진이 발생하지 않도록 작업시 모든 수단을 강구하

<p>기로 약속을 한바 있으며</p> <p>○따라서 의회로서는 본 청원에 대하여 집행부로 하여금 어떤 조치를 취하도록 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하여 소위원회에서는 본 건을 본회의에 부의할 필요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.</p> <p>○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는 다소 부족한 점이 있다하더라도 소위원회의 심사결과 대로 의결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.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.</p>	<p>路部分이고, 이쪽 部分이 問題인데 防音壁을 쌓고, 나름대로 이것이 住民들이 싫어하는 嫌惡施設이기 때문에 이 會社가 안겨겨나려고 갖은 노력을 다 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.</p> <p>○金泰雄委員 네, 本委員 質問 마치겠습니다.</p> <p>○委員長 柳準向 金箕英委員 質問해 주시기 바랍니다.</p> <p>○金箕英委員 金箕英委員입니다. 小委員長님한테 하나 여쭙봐도 되겠습니까?</p> <p>○請願審査小委員會委員長 朴夏榮 네, 좋습니다.</p>
<p>○委員長 柳準向 朴夏榮 小委員長님 수고 많으셨습니다. 그러면 小委員會에서 審査結果報告에 대한 質疑하실 委員님 계시면 質疑해 주시기 바랍니다.</p> <p>金泰雄委員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.</p> <p>○金泰雄委員 이 件에 대해서 內容을 오래 해도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. 小委員會에서 열심히 檢討해서 이런 결과가 나왔다고 생각을 하는데, 혹시 執行部에서 준비된 도면이나 뭐가 있으면 잠깐 좀 보여주었으면 좋겠는데요.</p>	<p>○請願審査小委員會委員長 朴夏榮 네, 좋습니다.</p> <p>○金箕英委員 事業主體가 설사 法規를 어기지 않고 營業行爲를 하고 있다 하더라도 住民이 겪고 있는 現實的 問題이므로 事業主側이 최대한 騒音과 粉塵이 發生하지 않도록 작업시 모든 수단을 講究하기로 약속을 한바 있다고 말씀하셨는데, 그 약속을 口頭로 받으셨습니까, 書類로 받으셨습니까?</p> <p>○請願審査小委員會委員長 朴夏榮 그 答辯드리기 전에 背景說明을 조금 드려야 되겠습니다.</p>
<p>○交通局長 黃哲民 제가 간단하게 答辯드리겠습니다.</p> <p>여기 지금 한국슈레다가 이런 형태로 지금 들어가 있고, 이 隣近住民들은 여기에 移住를 슈레다 이후에 들어왔습니다. 먼저 工場이 있었고, 그래서 그리고 난 이후에 이쪽 시끄럽다 해 가지고 防音壁을 住民들하고 차단하기 위해서 1次 防音壁…….</p>	<p>지금 交通局長의 現況說明을 聽取한 바 조금 補充을 하겠습니다.</p> <p>문제는 粉塵과 騒音의 關係인데 粉塵除去를 위해서는 바닥면적을 전부 콘크리트화해서 포장되어 있고 또 스프링클러 施設에서 수시로 撒水對策이 되어 있고, 또 이것이 부족한 경우에는 撒水車輛을 만들어서 수시로 撒水하는 對策이 講究되어 있었습니다.</p>
<p>○金泰雄委員 住居지가 어디예요?</p> <p>○交通局長 黃哲民 이쪽 이 住居地죠.</p> <p>○金泰雄委員 그리고 자책 나는 데는 슈레다 垆地인가요?</p> <p>○交通局長 黃哲民 그렇습니다. 여기에다 1次 防音壁 높이 10m 길이 94m로 防音壁을 쌓고 또 더 소리가 나니까 다시 防音壁을 한 8.5m로 136m 한벌 더 쌓고, 이쪽으로도 防音壁을 또 이렇게 8m로 70m를 쌓고, 절단기가 또 이 옆에 있습니다.</p> <p>그렇게 해 가지고 이쪽은 民家가 없이 道</p>	<p>따라서 騒音關係는 지금 說明을 받은 대로 이중으로 방음차단벽을 설치해서 전혀 없다고는 못 하겠지만 상당히 노력한 흔적이 있고, 또 그러한 정도면 그러한 位置에서 가능할 것으로 判斷했습니다.</p> <p>왜 그러나 당초에 許可面積을 보니까 1,000 坪이면 許可面積이 合當한데 현재 許可面積이 약 5,000餘 坪이고, 既存 使用하고 있는 全體敷地가 1萬餘 坪, 상당히 광활한 垆地 위 에서 作業을 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고, 또 한 가지는 騒音關係는 현재 합마 망</p>